

붙임 2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국도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도로건설공사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3. 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제1장 사업의 개요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노선인 국도47호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구간은 왕복 2차로 도로로 경기, 강원북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노선 주변으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차량 및 전차와 같은 폭이 넓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도로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중인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몰예정구간에 포함됨으로서, 금회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 및 확장, 수몰구간에 대한 국도이설을 통해 간선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사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사업노선	○ 총 사업연장 6.7km(신설 : 4.2km, 확장 : 2.5km)	

## 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방법,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2-240호), 2022.12.12」에 따라 작성하였음

**<표 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p><b>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b></p> <p>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li> <li>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li> </ol>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p><b>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b></p> <p>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li> <li>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li> <li>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li> </ol>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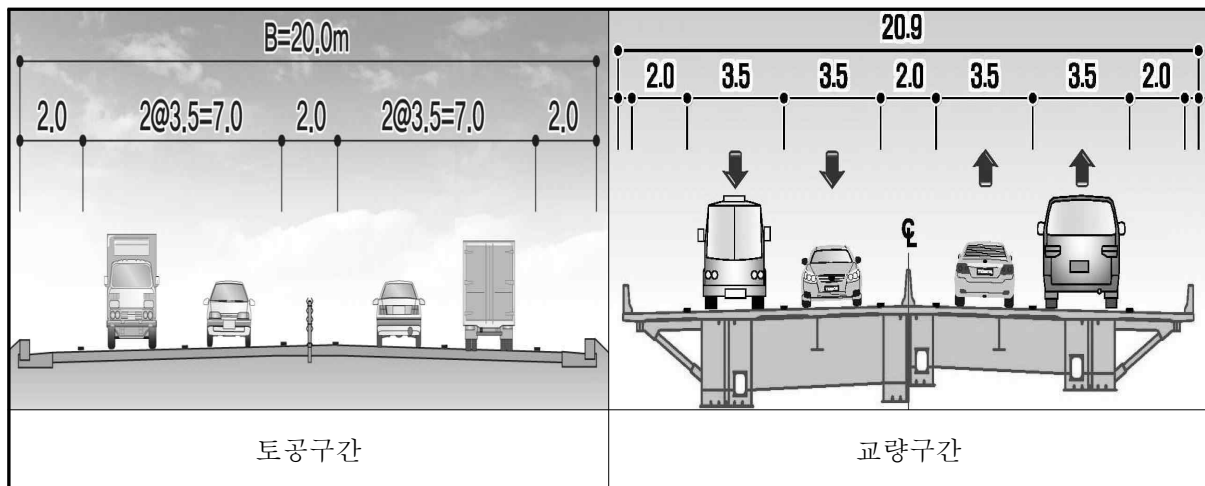
**1.4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05. 02. : 이동~장명 도로 건설공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 2016.08. : 제4차 국토·국지도 5개년 ('16~'20) 계획 고시→ 2차로 시설개량
- 2022.02 : 노선계획(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2022.07.26. :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3.06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23.0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예정)
- 2023.10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예정)

## 1.5 사업의 내용

### 1.5.1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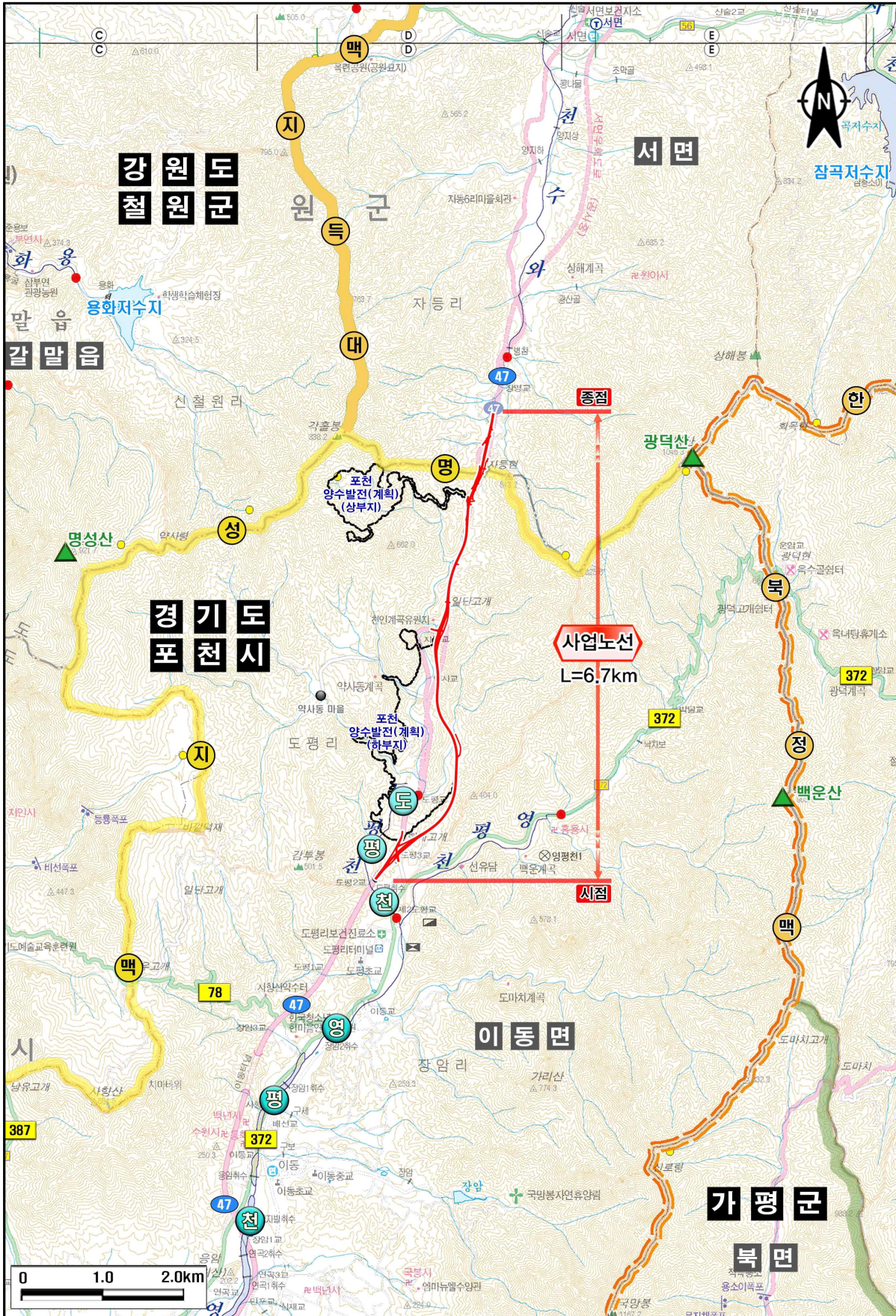
- 사업명 : 국도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도로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 주요 사업내용
  - 연장 : L= 6.7km
  - 폭원 : B= 20.0m  
(4차로 신설 및 기존도로 2차로→4차로 확장)
  - 교량 4개소 (240m)
  - 터널 2개소 (290m)
  - 설계속도 : 80km/hr



(그림 1-1) 토공 및 교량구간 대표제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총사업비 : 약 1,477억원
- 사업자 / 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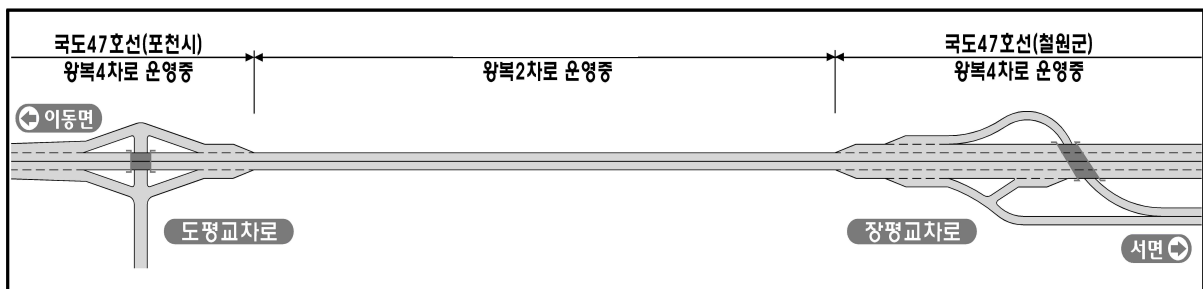
(그림 1-2) 사업노선 위치도



## 1.6 사업노선 현황

### 1.6.1 기존도로 현황 분석

- 현재 사업노선과 접속하는 전·후 구간은 왕복 4차로, 80km/h로 운영중에 있음
- 경기북부 진접읍에서 철원군 서면까지 국도47호선 약 70 km 중 본 사업노선 중 5.7km만 왕복 2차로에 60km/h로 운영중에 있어 차로 연속성 확보를 위해 4차로 확장 필요성이 대두됨



(그림 1-3) 기존도로 현황

#### 가. 포천양수발전소 수몰예정 부지구간

- 포천양수발전소 수몰예정 부지구간 내 국도47호선은 현재 양방향 2차로로 운영중에 있으며, 도로폭원 9.0~9.3m로 최대중단경사가 6.9%에 이르고 있음
- 2019.06.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도평리 일원을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예정부지로 선정 하였으며, 이에 국도 이설이 필요함
- 사업노선 양측으로 캠핑장, 펜션,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음



(그림 1-4) 포천양수발전소 예정부지구간 현황

## 나. 확장구간 노선현황

- 양방향 2차로 운영중, 도로폭원 8.8m(아스팔트 포장), 최대종단경사 9.0%로 나타남
- 수변구역, 취락지, 군부대 통과구간에 다양한 형태의 도로이용 수요 존재함
- 연속 오르막구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물(군부대, 포진지 등)을 근접 통과하고 있음



(그림 1-5) 확장구간 노선현황

## 1.6.2 금회 사업계획

- 기존 도로현황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노선 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1-3> 금회 사업계획

구분	제4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노선(안)			비고	
		신설구간	확장구간	전체		
노선	국도47호선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					
시·종점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연장	L=5.70km (기존도로 2차로 시설개량)	L=4.20km (4차로 신설)	L=2.50km (4차로 확장)	L=6.70km	-	
차로수	2차로(B=10.0m)	4차로 (B=20.0m)	4차로 (B=20.0m)	4차로 (B=20.0m)	-	
사업규모	교량	2개소 / 50m	4개소 / 240m	-	4개소 / 240m	-
	터널	2개소 / 180m	2개소 / 290m	-	2개소 / 290m	-

##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2.1 평가 대상지역

- 본 사업시행으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기협의된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22.03), 한국수력원자력(주)’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 사업시행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2022.12.12, 환경부”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 2.1.1 입지의 범위

- 사업명 : 국도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도로건설사업
- 사업구간 : (시점)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종점)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 도로제원 : 6.7km

###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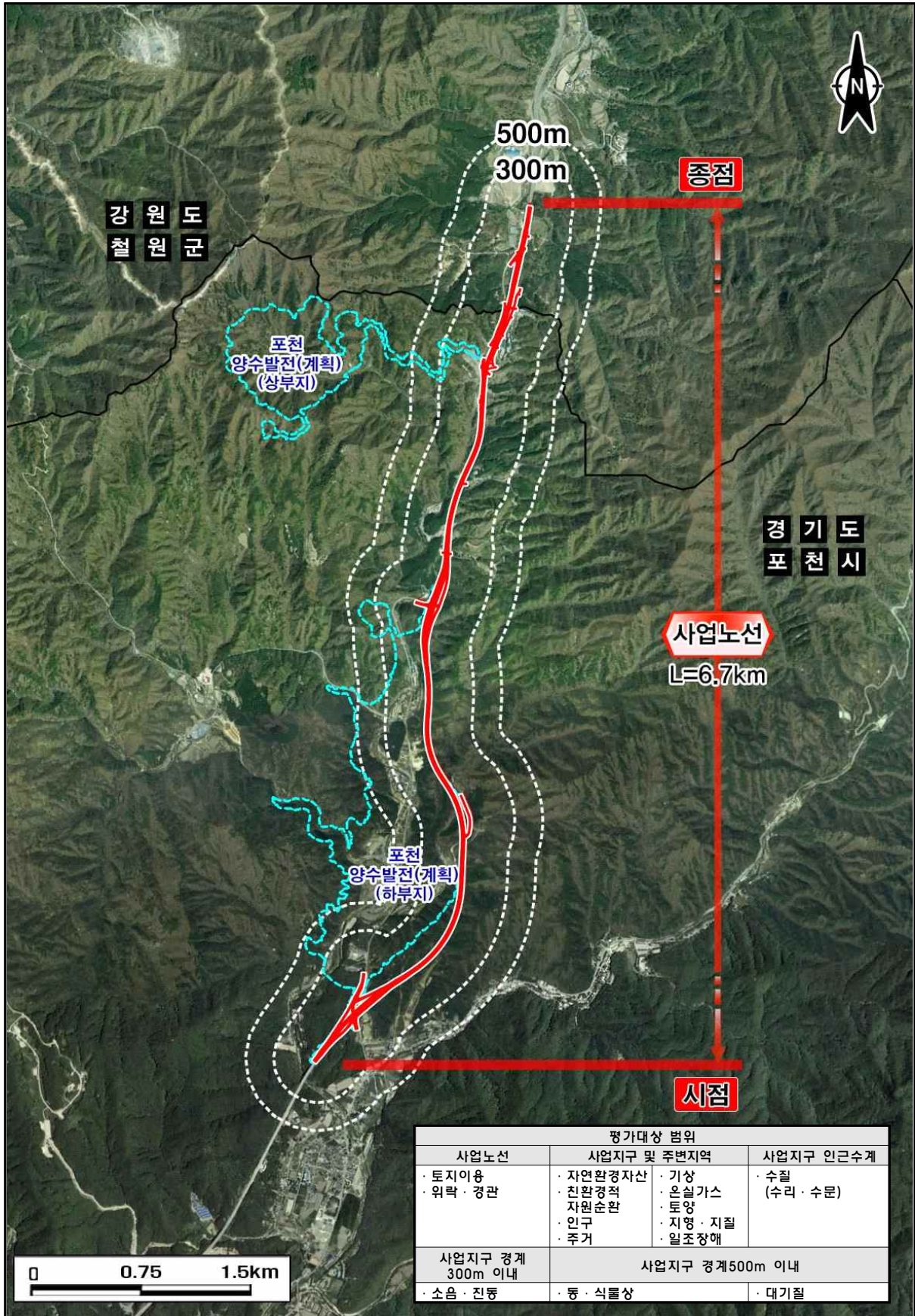
〈표 2-1〉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분	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생태연결성, 생물상 이동성 등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 사업노선 경계 0.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노선 ○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 환경	기상	○ 사업노선 및 인근 지역 기상 특성 분석 ○ 타 항목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노선 ○ 주변지역	-
	대기질	○ 사업시행전 사업노선 주변 대기질 현황 파악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운행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상 지역	○ 사업노선 경계 0.5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장비 가동 및 연료사용, 운영시 사업노선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지역	○ 사업노선 ○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표 계속>

구분	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수 환경	수질 (수리·수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전 사업노선 인근수계의 수질 및 하천 현황 등 파악</li> <li>○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투입인부의 오수발생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li> <li>○ 교량 건설로 인한 토사유출 발생 영향 검토</li> <li>○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검토</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 검토</li> <li>○ 운영시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인근 수계 (도평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운영시</li> </ul>
토지 환경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편입 및 도로시설물 설치계획 파악</li> <li>○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운영시</li> </ul>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li>○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ul>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 및 지질분포현황 파악</li> <li>○ 공사시 토공량 발생</li> <li>○ 지반안정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li>○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운영시</li> </ul>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지장물 철거,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 폐기물 등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li>○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운영시</li> </ul>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인근 주요도로망, 소음·진동 현황파악</li> <li>○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li> <li>○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 경계 0.3km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운영시</li> </ul>
	위락·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절·성토작업 및 구조물 설치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li>○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li> </ul>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물 설치계획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 농경지 등 일조 영향 예상지역 현황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li>○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li> </ul>
사회 경제 환경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현황 및 인구변화 여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li>○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운영시</li> </ul>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현황 및 지역단절구간 발생 여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노선</li> <li>○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li> <li>○ 운영시</li> </ul>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제3장 대안의 설정

###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3.1.1 대안의 종류

- 환경영향평가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240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1〉 대안의 종류

환경영향평가 대안	비고
○ 수단·방법(저감방안을 포함한다)	-
○ 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사업규모	선정
○ 토지이용계획(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선정
○ 시기·순서	-
○ 기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 3.1.2 대안선정 결과

- 본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서 강원도 철원군 서면을 연결하는 국도47호선에 대한 도로건설공사로, 기존국도의 선형불량개선 등 교통편익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특성을 고려한 대안 종류 중 “사업규모”와 “토지이용계획”을 선정하여 대안별 검토를 실시함

〈표 3-2〉 대안의 선정 결과

종류	선정사유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를 비교하여 대안으로 선정</li> <li>○ 금회 사업시행시 기존 예비타당성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안(사업노선) : 4차로 신설 및 기존도로 4차로 확장(선정안)</li> <li>- 2안(예비타당성안) : 기존도로 2차로 시설개량</li> <li>- 3안 : 동측 우회 신설 2차로 및 기존도로 2차로 시설개량(포천양수발전소 사업계획 반영)</li> </ul> </li> </ul>
토지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대상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li> <li>○ 선형사업의 경우 노선조정을 대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안(사업노선) : 포천양수발전소 동측우회 신설(4차로) 및 기존도로 4차로 확장(선정안)</li> <li>- 2안 : 포천양수발전소 서측우회신설(4차로) 및 기존도로 4차로 확장</li> </ul> </li> </ul>



### 3.2 대안별 비교 ·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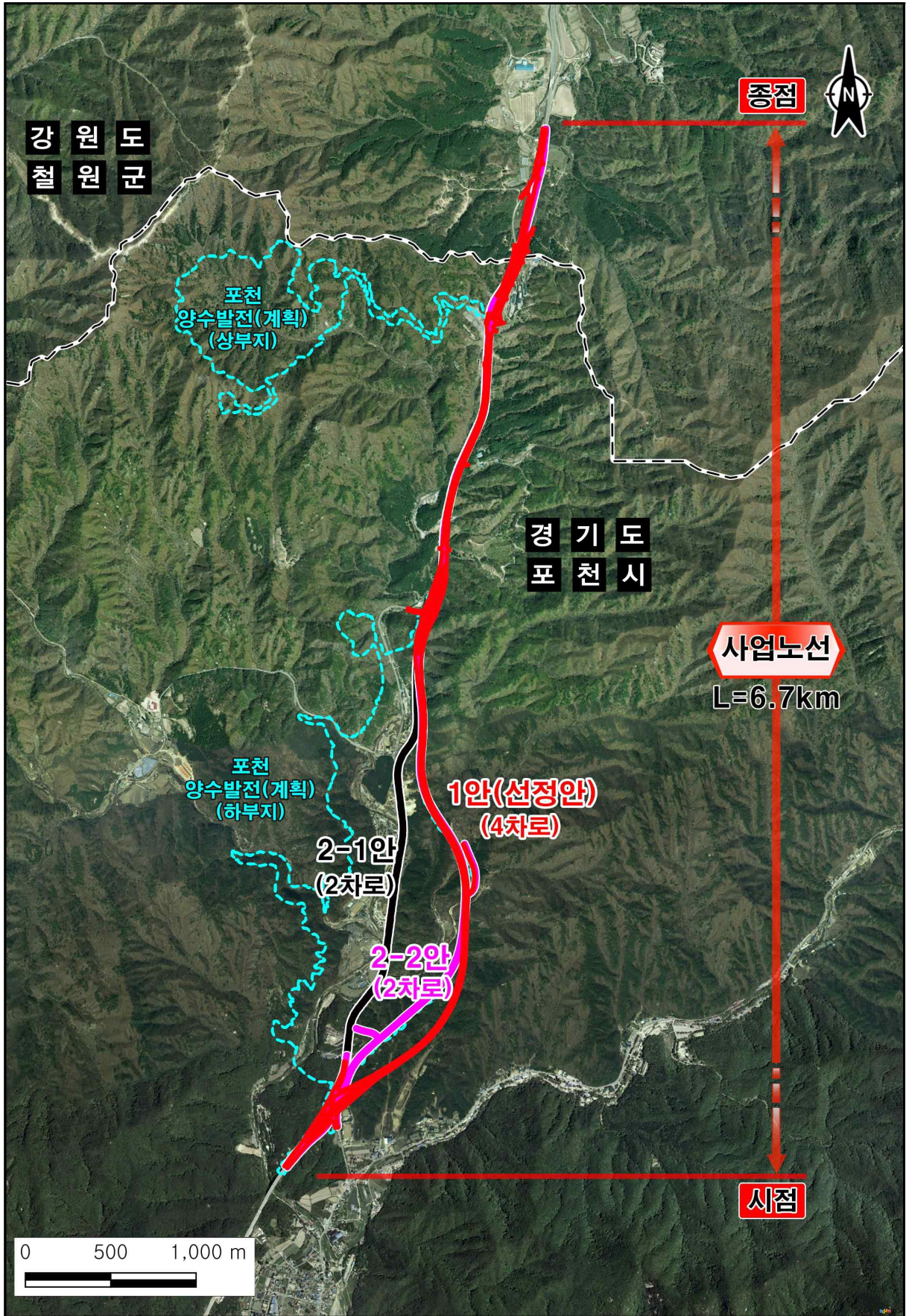
#### 3.2.1 사업규모에 따른 비교 · 분석

- 금회 사업노선인 1안과 연장 및 차로수에 따라 3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하였음
  - 1안(사업노선) : 4차로 신설 및 기존도로 4차로 확장(선정안)
  - 2안(예비타당성안) : 기존도로 2차로 시설개량
  - 3안 : 포천양수발전소 동측 우회 신설 2차로 및 기존도로 2차로 시설개량
- 기존 사업노선과 접속하는 전·후 구간은 왕복 4차로 80km/h로 운영중에 있으며, 경기북부 진접읍에서 철원군 서면까지 국도47호선 약 70km 중 본 사업노선 중 5.7km만 왕복 2차로에 60km/h로 운영중에 있어 차로 연속성 확보를 위해 4차로 확장하는 1안을 선정함

〈표 3-3〉 사업규모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1안(금회)			2안		비 고	
	신설구간	확장구간	전체	2-1안	2-2안		
시·종점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개 요	신설(4차로) 및 기존도로 4차로 확장			기존도로 2차로 시설개량	신설(2차로) 및 기존도로 2차로 시설개량	-	
연 장	L=4.20km (4차로 신설)	L=2.50km (4차로 확장)	L=6.70km	L=5.70km	L=6.67km	-	
차 로 수	4차로 (B=20.0m)	4차로 (B=20.0m)	4차로 (B=20.0m)	2차로 (B=10.0m)	2차로	-	
사업 규모	교량	4개소 / 240m	-	4개소 / 240m	2개소 / 50m	5개소 / 375m	-
	터널	2개소 / 290m	-	2개소 / 290m	2개소 / 180m	1개소 / 120m	-
장 · 단점	포천양수발전소 수물예정구간으로 4차로 신설 가능			수물예정구간 통과로 과업추진 불가	포천양수발전소 수물예정구간 4차로 신설 불가	-	
	유지관리비 보통 (깎기부 환경훼손 보통)			-	유지관리비 보통 (깎기부 환경훼손 보통)	-	
	수물예정구간 교량 설치 최소 (1개소/120m)			-	수물예정구간 교량 설치과다 (3개소 / 290m)	-	
	STA.3+600~3+680 구간 터널 설치 배제 및 계곡부 배수 처리 가능			-	STA.3+900~3+980 구간 터널 설치 배제 및 계곡부 배수 처리 가능	-	
	4차로 계획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군부대 등) 협의 유리, 전·후구간 연계성 확보			-	2차로 계획으로 관계기관(지자체, 군부대 등) 협의 불리, 전·후구간 연계성 확보 불가	-	
선정안	◎			-	-	-	





(그림 3-1) 사업규모에 따른 대안별 노선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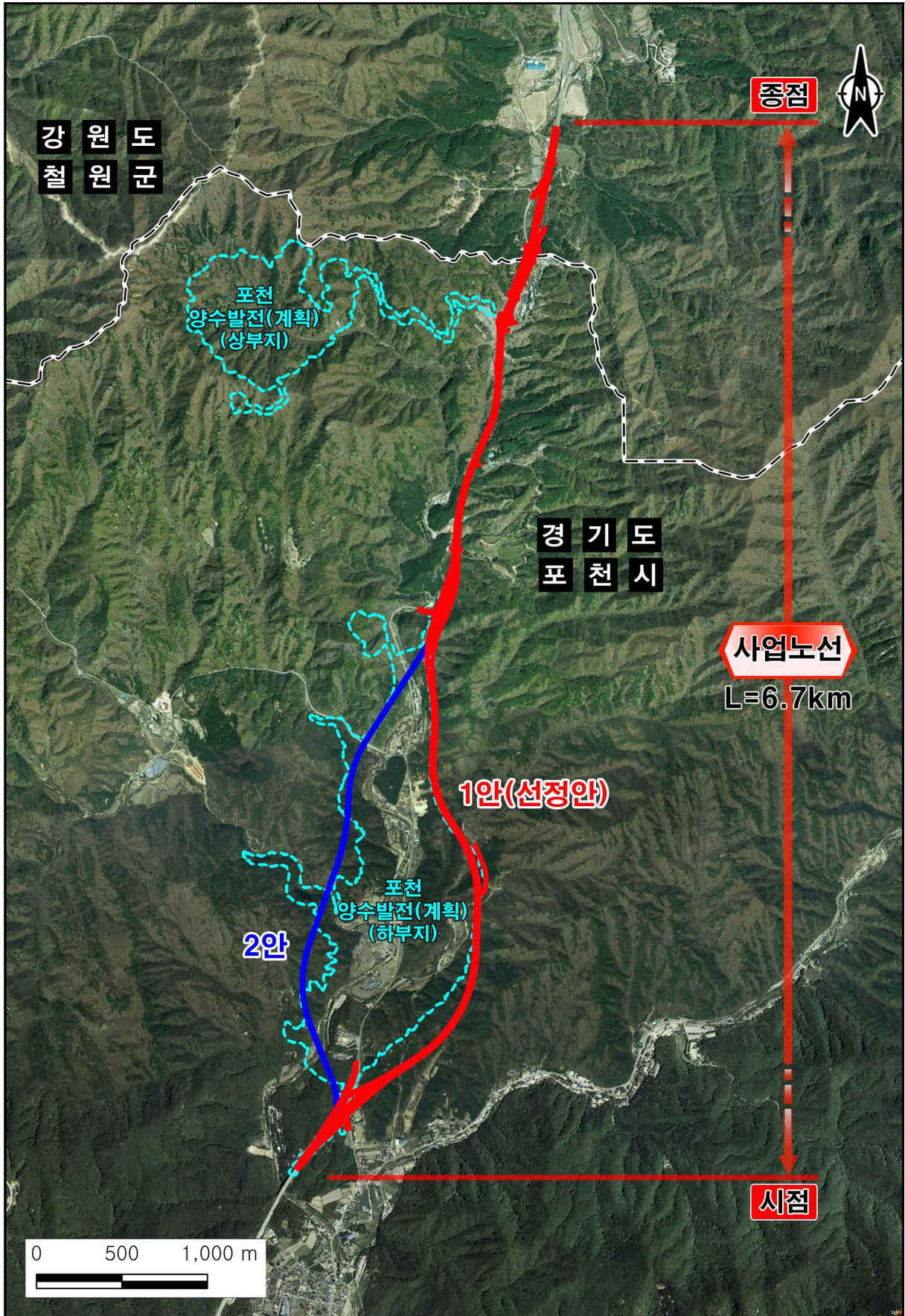
### 3.2.2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비교·분석

○ 본 사업노선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대안별 검토는 총 2개의 대안으로 비교·검토하였으며, 그 중 교량 등 시설물 설치가 적고 터널연장이 적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1안을 선정하였음

〈표 3-4〉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1안	2안
개 요	포천양수발전소 동측 우회 신설(4차로) 및 기존도로 4차로 확장	포천양수발전소 서측 우회 신설(4차로) 및 기존도로 4차로 확장
연 장	L=6.70km	L=6.30km
설계속도	80km/h	80km/h
최소곡선반경	R = 600m	R = 340m
최대중단곡선	Smax = 6.70%	Smax = 6.70%
교 량	4개소 / 240m	7개소 / 725m
터 널	2개소 / 290m	2개소 / 690m
차 로 수	4차로	4차로
추정사업비	904.4억원	1,151.1억원
장점 및 단점	포천양수발전소 수몰예정구간 4차로 신설 가능	
	유지관리비 보통 (깎기부 환경훼손 보통)	유지관리비 과다 (깎기부 환경훼손 심함)
	교량 설치 최소 (1개소 / 120m)	교량 설치 과다 (2개소 / 320m)
	STA.3+600~3+680 구간 터널 설치 배제 및 계곡부 배수 처리 가능	STA.3+500~3+580 구간 터널 설치 배제 및 계곡부 배수 처리 가능
	4차로 계획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군부대 등) 협의 유리, 전·후구간 연계성 확보	4차로 계획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군부대 등) 협의 유리, 전·후구간 연계성 확보
	수몰예정지 우측(도평리 산47임 등) 기존 농지 및 묘지 접근성 양호	수몰예정지 우측(도평리 산47임 등) 기존 농지 및 묘지 접근로 단절로 진입을 위한 추가도로(L=2.0km) 설치 필요
선정안	◎	-
검 토 의 견	○ 포천양수발전소 건설계획(수몰예정구역)을 반영하고, 과업노선 전후구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지자체, 군부대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4차로 확장 및 설계속도 80km/h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 및 묘지 접근성이 양호한 1안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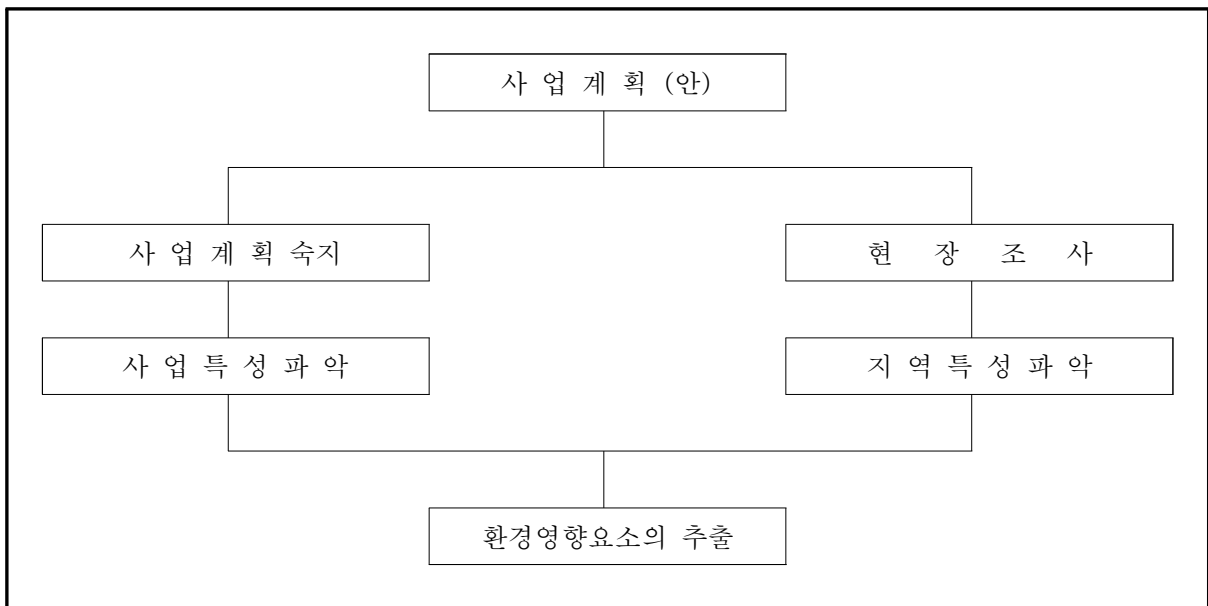
(그림 3-2)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대안별 노선검토

##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4.1 평가항목의 선정

#### 4.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자연 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그림 4-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흐름도

<표 4-1> 단계별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분	공 사 시		운 영 시	
환경영향요소	○도로 노선 공사	○지형변형, 수목의 벌채, 깎기 및 쌓기, 굴착 및 밭파, 토지점용	○시설물 이용	○도로, 교량, 배수로, 통로 등
	○건설자재	○골재, 석재의 확보 및 운반, 건설기자재 운반 및 가동, 토사이동	○차량통행	○배기가스 발생, 소음 발생
	○시설공사	○교량 공사, 배수 및 통로박스 공사, 터널 공사, 포장 공사, 공사인부 투입	-	-



### 4.1.2 평가항목의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2-240호), 2022.12.12, 환경부」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 본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10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기상, 자연환경자산, 일조장해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항목은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그 외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산업 등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항목별 선정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2〉 평가항목 등 선정

구 분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합 계	10항목	5항목	5항목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	○ 대기질 ○ 온실가스	○ 기상	○ 악취
수환경	○ 수질(수리·수문)	-	○ 해양환경
토지환경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
생활환경	○ 친환경적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 전파장해 ○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	-	○ 인구 ○ 주거	○ 산업



〈표 4-3〉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평가	현황	제외	
		10	5	6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 서식여부 및 보전대책
	자연환경자산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 유무 파악
대기 환경	기 상	-	○	-	○주변기상대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대기질	○	-	-	○공사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영향예상 지역을 평가대상 범위로 설정 ○운영시 운행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영향예상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온실가스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차량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악 취	-	-	○	○사업특성 및 입지여건상 악취에 미치는 영향 미약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투입인부 발생오수로 인한 주변수계 미치는 영향 검토 ○교량 건설로 인한 토사유출 발생 영향 검토 ○수질오염총량관리 검토 ○재해(홍수 등) 안정성 검토
	해양환경	-	-	○	○사업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 미약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토공구간의 절·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비탈면발생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소음·진동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운영시 교통소음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위락·경관	○	-	-	○절·성토작업 및 구조물 설치로 경관 변화 예상
	위생·공중보건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구조물 설치계획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 농경지 등 일조 영향 예상지역 현황 파악
	전파장해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약
사회 경제 환경	인 구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인구 현황 파악
	주 거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주거 현황 파악
	산 업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과 연계된 산업 변화 미약



## 4.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현황조사 방법 및 인용 문헌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4-5〉 현황조사 방법

구 분	조사방법	문헌자료
대기질	○ 현지 및 문헌조사	○ 사업노선 주변 측정소 자료 등
지표수질	○ 현지 및 문헌조사	○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측정망 자료 등
지하수질	○ 현지 및 문헌조사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자료 등
토양	○ 현지 및 문헌조사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자료 등
소음진동	○ 현지 및 문헌조사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자료 등
동식물상	○ 현지 및 문헌조사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조사 자료 등

○ 현지조사 항목, 지점, 횟수 및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4-6〉 현지조사 지점,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조사방법
대기질	○ PM-2.5, PM-10, SO <sub>2</sub> , NO <sub>2</sub> , CO, O <sub>3</sub> , Pb, 벤젠	4	3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지표수질	○ pH, BOD, COD, DO, SS,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디클로로메탄, 벤젠, TOC	4	3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지하수질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수, 분원성대장균군수, Pb, F, As, Hg, CN, Cr <sup>6+</sup> , NH <sub>3</sub> -N, NO <sub>3</sub> -N, Cd, 페놀, 유기인, TCE, P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경도, 과망간산칼륨, Cu, 색도, pH, Zn, Cl <sup>-</sup> ,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	2	3	먹는물수질공 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토양	○ Cd, Cu, As, Hg, Pb, Cr <sup>6+</sup> , Zn, Ni, 불소, 유기인, PCB,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3	3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소음진동	○ 소음도, 진동레벨	4	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동식물상	○ 육상동식물상, 육수생물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3	자연환경조사 방법 등

주) 계절별 조사 시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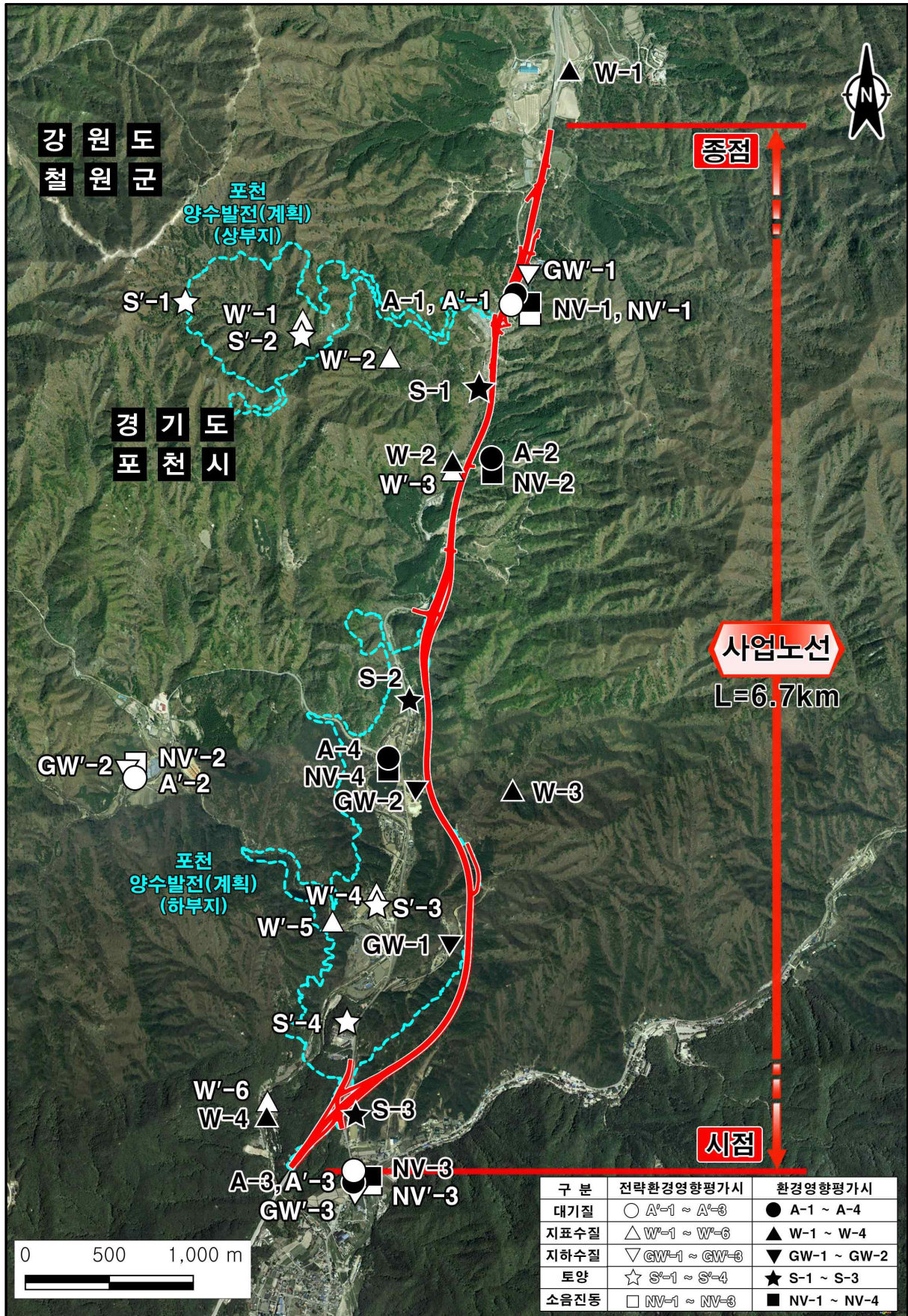


〈표 4-7〉 현지조사 지점 및 선정사유

구분	포천양수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금회 환경영향평가지		사유	비고
	지점명	위치	지점명	위치		
대기질	A-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6584-17(대아농원)	A-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6584-17(대아농원)	주거 지역	확장
	A-2	경기도 포천시 금강로 6263번길 227	A-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6466	주거 지역	확장
	A-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포화로2(도평2리마을회관)	A-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포화로2(도평2리마을회관)	주거 지역	신설
	-	-	A-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6263번길6 (도평3리마을회관)	주거 지역	신설
지표수질	W-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399	W-1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829-2	무명천	확장
	W-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394	W-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10	도평천	확장
	W-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10	W-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35-1	송가골천	신설
	W-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511	W-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471	도평천	신설
	W-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498-2	-	-	-	-
	W-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471	-	-	-	-
지하수질	GW-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6584-17	GW-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508	생활용수	신설
	GW-2	경기도 포천시 금강로 6263번길 227	GW-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32	생활용수	신설
	GW-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502	-	-	-	-
토양	S-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401	S-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6531	-	확장
	S-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399	S-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6304	-	신설
	S-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511	S-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469-8	-	신설
	S-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483-3	-	-	-	-
소음진동	NV-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6584-17(대아농원)	NV-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6584-17(대아농원)	주거 지역	확장
	NV-2	경기도 포천시 금강로 6263번길 227	NV-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 6466	주거 지역	확장
	NV-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포화로2(도평2리마을회관)	NV-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포화로2(도평2리마을회관)	주거 지역	신설
	NV-4	-	NV-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금강로6263번길6 (도평3리마을회관)	주거 지역	신설
동식물상	노선 경계로부터 1km 이내		노선 경계로부터 0.5km 이내		-	-

주)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지점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그림 4-2) 현지조사 지점도

### 4.3 평가범위 및 방법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4-8〉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연생태 환경	①조사내용 ○식물상 현황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동물상 현황 -분류군별 중 분포 및 서식 현황  ○육수 생물상 현황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중 분포 및 서식 현황  ○특이할만한 중 분포 및 서식 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및 예측  ○동물상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육수생물상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과 사업시행 으로 이들 중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사업노선 경계 0.5km이내
자연환경 자산	①조사내용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조사 :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습지보호구역 등 ②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사업노선 ○주변지역



<표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대기환경	기상	①조사내용 ◦최근 기상현황분석 ②조사범위 ◦사업지구(인근 기상대) ③조사방법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기상연보 ◦기상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노선 ◦주변지역
	대기질	①조사내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원(면·선·점) 현황 파악 ②조사범위 ◦직·간접 영향권 : 0.5km 이내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대기질 4 지점 × 3회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누적 평가 고려) ◦AERMOD 등 확산 모델 이용	◦사업노선 경계 0.5km 이내
	온실가스	①조사내용 ◦사업노선 인근 온실가스 배출 시설 현황조사 ②조사범위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 조사	◦배출량 원단위 및 IPCC 배출 계수 등을 이용하여 공사시 건설 장비 운용 및 운영시 통행차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사업노선 ◦주변지역
수환경	수질 (수리 · 수문)	①조사내용 ◦하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 농도 ◦주변 지하수 현황(문헌조사)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조사범위 ◦사업노선 및 인근수계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지표수질 4 지점 × 3회 ◦지하수질 2 지점 × 3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운영시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 ◦공사 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부하량 예측	◦사업노선 인근수계

<표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토지환경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li> <li>◦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li> </ul> ②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노선</li> </ul> ③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자료 및 현지조사</li> </ul>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 이용변화 파악	◦사업노선
	토양	①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li> </ul> ②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노선 및 주변지역</li> </ul> ③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자료</li> <li>◦토양 3 지점 × 3회</li> </ul>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사업노선 ◦주변지역
	지형 · 지질	①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연약지반 검토</li> <li>◦특이지형</li> </ul> ②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노선 및 주변지역</li> </ul> ③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자료 및 현지조사</li> </ul>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 발생, 지반안정성 등	◦사업노선 ◦주변지역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li> </ul> ②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노선 및 주변지역</li> </ul> ③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자료 조사</li> </ul>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중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사업노선 ◦주변지역
	일조장해	①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조현황</li> </ul> ②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노선 및 주변지역</li> </ul> ③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자료 및 현지조사</li> </ul>	◦구조물 설치계획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 농경지 등 일조 영향 예상지역 현황 파악	◦사업노선 ◦주변지역

<표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생활환경	소음 · 진동	①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정온시설을 포함한 사업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②조사범위 ◦사업노선 경계 0.3km이내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조사지점 ◦소음·진동 : 4지점 × 3회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운영시 통행차량에 따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영향 예측	◦사업노선 경계 0.3km이내
	위락 · 경관	①조사내용 ◦경관 우수지역 현황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조사범위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 정도, 조망의 변화 ◦조망점별 경관변화예측 실시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사업노선
사회· 경제환경	인구	①조사내용 ◦인구현황 파악, 장래변화 예측 ②조사범위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변화 예측	◦사업노선 ◦주변지역
	주거	①조사내용 ◦주거현황 파악, 장래변화 예측 ②조사범위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주거 변화 예측	◦사업노선 ◦주변지역



##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5.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

〈표 5-1〉 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실시근거

관련법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	<p>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1. 11.&gt;</p> <p>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 5.2 주민의견 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음

〈표 5-2〉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실시근거

관련법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5. 29.>

## 5.2.1 공고·공람

### 가. 신문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 나. 공고·공람 사실의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정보통신망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일~6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는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소정양식의 ‘평가서 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 를 비치할 것임

### 5.2.2 설명회 개최

-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에서 개최하고, 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설명회 개최 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2.3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사업의 개요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2.4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5.2.5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요건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또한, 같은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의견 재수렴 사유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함
  - 의견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표 5-3〉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관련법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 주관행정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포천시,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3. 3. 3 ~ 2023. 3. 23
- 결정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표 6-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과장	장 0 0	계획수립기관
2	위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무관	이 0 0	계획수립기관
3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윤 0 0	협의기관
4		원주지방환경청	주무관	고 0 0	지방환경관서
5		포천시청	주무관	유 0 0	지자체
6		철원군청	주무관	박 0 0	지자체
7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주 0 0	민간전문가
8		(주)경호엔지니어링	부사장	허 0	민간전문가
9		포천시	이장	김 0 0	주민대표
10		철원군	이장	김 0 0	주민대표
11		자연보호협의회	지회장	박 0 0	시민단체

## 6.2 심의결과

### 붙임2

### 심의결과 통보서 서식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서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동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아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환경보전방안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 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지형·지질 등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에 운영 및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2022.12.12)」 [별표5]의 6(대안의 설정)에 따라 사업의 성격 및 내용,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대안은 사업의 규모, 사업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영향이 큰 저감방안 위주로 검토 및 설정

#####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 (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 사항 및 근거자료를 반드시 수록·제시
-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현황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절별로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차량, 터널 진·출입로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
- (수질·지하수) 지하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터널폐수, 토사유출, 오수 및 비점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및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소음·진동) 공사(발파 포함) 및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경관) 사업시행 시 산림훼손 구간, 절·성토 사면 발생지역 등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예측(경관시뮬레이션)하고,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제시
- 현황조사 지점은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예측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항목별 조사 시기, 조사지점(도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들이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별도의견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환경영향평가서는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3.3.22.

심의위원 : 윤혜원 [서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

(계획명 : 국도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도로건설공사)

### □ 총괄의견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2.3, 환경부)」을 참고하여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대안의설정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평가항목 범위 등에 대한 심의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V ), 수정의견( )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V ), 수정의견( )

3. 토지이용 구상안(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 의견없음( V ), 수정의견( )

- 교량 선정 시 조류별 비행높이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높이 등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노선계획 수립 시 계획노선의 지형 및 주변 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자연공원, 생태계 및 생태·녹지축, 주요 수계, 자연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제시

※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기준도로 활용, 노선 우회, 터널 설치 및 터널을 설치할 경우 입·출구부 위치 조정 등) 다각도로 검토

- 도로 개설로 인한 지형훼손 및 생태계 단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 선정·제시

- 과도한 지형변화 및 절·성토 사면 발생에 따른 생태·경관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절·성토 사면 조성 및 복원 계획 수립·제시 등

- 절·성토 사면 발생구간, 구간별 적용공법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지형훼손 최소화 방안 강구

4.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V ), 수정의견( )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V )

- 도로사업은 복합적인 입지에 걸쳐 조성되어 다양한 환경변화를 유발하는 사업이므로 식생훼손, 생태계 단절, 수질·대기질 오염부하 가중, 소음·진동 등 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결정하여야 함

- 생태축 훼손 구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동·식물상 영향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장조사 경로에 사업구간 인근에 분포하는 습지가 일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터널 상부에 대한 조사경로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천연샘, 습지 등의 분포 여부를 확인

- 토공구간 및 교량 통과구간에 대한 조사경로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전 조사구간 내 분포 가능성이 있는 주요 생물(범정보호종 등)을 목록화하고 해당 종 출현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개발기본계획만 해당) : 의견없음( V ), 수정의견( )

7. 약식평가

- 약식평가 이행 근거로 ‘금회 사업 규모가 6.7km로 환경영향평가 최소 규모인 4km의 200% 미만임’ 을 제시하였으나, 금회 사업은 산지전용허가가 함께 포함된 사업이므로 산지전용허가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약식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 또한, 도로 신설사업이 생태계 단절 및 훼손 등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금회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8. 기타

- 2005년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검토된 노선과 금회 노선을 비교하여 변경사항 유무를 제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3. 3. .

심의위원 : 고 은 별 (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포천시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 총괄의견

- 도로건설공사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및 민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지역의 환경상 영향예측과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한 주민의견반영이 필요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대상지역의 설정

- 주변 정온시설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대기질의 대상범위는 500m, 소음·진동의 대상범위는 300m로 설정하였으나, 주거지역, 야영장 등과 인접하여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예측이 필요한 바 대상지역 범위 확대 등 신중하게 검토 필요

#### 2. 토지이용 계획안

-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3. 대안

- 의견없음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 시 주변에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6. 기 타

- 본 환경영향평가 약식평가절차 진행을 찬성함
- 평가준비서 제4장 지역개황 기재 오류 및 누락사항
  - 4.3. 파.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33p)
    - 포천시 전역은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비고3에 따라 청정지역 기준 적용
  - 4.3.9. 사. 공공하수처리시설(52p)
    - 관인·심곡·직동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누락
  - 포천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구역에 해당하므로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2023. 3. 8.

심의위원 : 유 훈 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 총괄의견

-본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인접마을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인접마을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 발생 정도를 예측해보고 그 대비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토지이용 계획안

- 사업노선 중 임야 부분에 대한 생태계 현황을 고려하여 지형훼손 및 생태계 훼손(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3. 대안

- 대안의 비교 검토시 각 대안에 따른 구체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 내용의 비교, 환경적 특징)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시 발생하는 민원발생(소음·진동, 비산먼지)의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 하여야 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 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 적정함

#### 7. 기 타

- 본 환경영향평가 약식평가절차 진행을 찬성함
- 우리 철원군 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2023. 3. 24.

심의위원 : 박혜진 [서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건서**  
(국도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도로건설공사 )

총괄 의견

- 계획노선에 대해 선정한 다수의 대안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고, 계획노선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이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간별 평면 및 종단 선형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노선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경유하고 있으므로 절토 및 성토 등으로 인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간별 평면 및 종단 선형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대안

- 협의회에서 선정한 대안에 대해서 다양한 환경지표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계획노선 주변으로 주요 민원의 내용과 발생 구간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간별 노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 : 생태계 변화관찰지역에 대한 문헌조사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현지 조사 계획 수립
- 수질 : 터널로 인한 지하수 영향 예측, 폐수 발생량 예측 및 처리계획
- 지형 : 광산 및 광구 등의 현황 조사
- 경관 : 지형경관 1등급지를 비롯한 주요 자연 및 경관자원 분포 현황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특이사항 없음

2023. . 3 . 14

위원 주용준 (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 총괄의견

본 사업은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물예정구간에 포함된 국도의 이설과 기존도로의 선형 불량 구간 개선 및 확장을 통해 간선도로 기능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및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2022.03),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설정된 평가대상지역과 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분포현황 등을 고려할 때, 각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범위는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2. 토지이용 계획안

기존 국도47호선이 포천양수발전 수물예정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로를 이설하는 계획으로 금번 사업계획시 기존도로의 선형불량구간 개선 및 협소한 도로폭을 확장(기존 2차로→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3. 대안

대안노선 중 수물예정구간을 우회하고 기존도로의 확장(4차로)을 통한 전·후구간의 연계성 확보 및 기존 농지·묘지와 접근성이 양호한 동측 우회노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은 적정하게 설정됨.

- 다만, 노선 신설로 인해 인근 산림지역에 생태적 단절이 예상되는 바, 포천양수발전소와 배후 입야기간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본 사업은 수물예정구간에 포함된 국도의 이설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존도로에 대한 선형개선 및 확장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본 사업시행의 주요 배경인 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해당 계획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각 계획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7. 기 타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약식평가 절차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약식평가 절차 이행에 찬성함.

2023. 3. 15.

심의위원 : 허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협의회 위원들이 제시한 문제점 및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여야 할 것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 하였음

2. 토지이용 계획안

기존 도로 4/3선의 환경영향수반을 수반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여타 유치는 본 사업으로의 계획이 적절함

3. 대안

수문 매정역로 횡단하지 않는 유류 유체노선이 적당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 항목 범위 등은 적절하게 선정 되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들의 이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적정함

7. 기타

본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이 적절히 진행이 될 것임에 따라 도로를

2023. 3. 21 .

심의위원 : 김 병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국도 41호선의 포천이동-철원서면간 왕복 2차로 6.4km에 대한  
평가 지역의 수원 4법은 환수원의 위략의 아니더라도, 이미 추진도있어  
야 할 사업으로 서면지역의 주변을 노후가 본 도로 확장은  
긍정적으로 환영하고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대상지역의 설정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판단함
- 2. 토지이용 계획안  
잘 이해가 되었음
- 3. 대안  
적절히 검토되었음
- 4. 평가 항목별위·방법 등  
평가항목의 선정사항이 적절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계획에 동의함
- 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적절히 설정 되었음
- 7. 기타

2023. 03. 22 .

심의위원 : 김 용 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포천이동-철원서면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 총괄의견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음  
(재개발지 등, 식물상 500m, 동물·인동 300m)
2. 토지이용 계획안  
기존 국토 계획상의 편치양수발전소 수몰지역은 편입됨에 따라 우려하는 본 사업노선의 계획안이 적절함
3. 대안  
수몰예정지를 횡단하지 않는 우측 우회 노선이 타당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적절하게 선정되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들이 이해하기 수단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6.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적극함
7. 기타  
본 환경영향평가 분석평가결과 간행물/작성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함

2023. 3. 25.

심의위원 : 박동진 (서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